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7173 손해배상(기)
원 고 민○○ (0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광, 김순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시중
피 고 임○○ (0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시흥동 ○○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윤길용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0,5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 근린생활시설 1층에 있는 '○○'에 관하여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32,760,5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10.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3. 10. 1.부터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방수공사를 완료하는 때까지 매월 말일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설비를 갖춘 다음 2011. 12. 21.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3.초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족발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2. 6. 25.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바로 밑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 천장에 구멍이 나면서 누수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에 따라 2012. 8. 16.경 방수공사업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유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 8. 2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채운 것과 동일한 색깔의 물이 이 사건 누수 지점을 통해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 주방 하단 트랜치 부근의 타일줄눈이 탈락되어 트랜치와 타일 사이에 물이 들어갔고, 트랜치와 연결되는 하수배관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한 벽체·천장·바닥 철거, 천장 백화부위 제거, 균열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에 9,760,587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9,760,587원이 된다.

2)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액으로 이 사건 누수발생일 무렵인 2012. 7.부터 피고가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한 무렵인 2012. 9.까지 3개월에 한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9호증의 3, 4,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점의 월별 카드사용 매출액은 2011. 12. 9,358,000원, 2012. 1. 7,662,000원, 2012. 2. 6,937,000원, 2012. 3. 10,031,000원(현금영수증 85,000

원 미포함), 2012. 4. 5,246,000원, 2012. 5. 5,458,000원, 2012. 6. 6,041,000원, 2012. 7. 3,013,000원, 2012. 8. 2,910,000원, 2012. 9. 1,681,000원, 2012. 10. 4,7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주점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7,247,571원(= (9,358,000원 + 7,662,000원 + 6,937,000원 + 10,031,000원 + 5,246,000원 + 5,458,000원 + 6,041,000원)/7개월, 원 미만 버림)인데 반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인 2012. 7.경부터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 공사가 시행된 무렵인 2012. 9.까지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2,534,666원(= (3,013,000원 + 2,910,000원 + 1,681,000원)/3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월 4,712,905원(= 7,247,571원 - 2,534,666원)이 감소한 점, 위 매출액은 카드사용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매출액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의 누수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의 손해는 매출액의 감소분이 아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으로서 위 매출액 감소분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 매출액의 증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내지 계절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 매출액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3개월 동안 입은 영업손실액은 월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악취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임시 누수 방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수를 퍼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보수요청에도 보험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거두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임시 누수방지공사 시행 후로는 영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인 2012.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9.경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5,000,000원(= 15개월 ×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¹⁾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및 영업손실액 등 앞서 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1) 원고는 2013.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2. 7.부터 2013. 9.까지의 위자료를 계산 착오로 14,000,000원만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60,587원(= 9,760,587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음식점 주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에 누수 및 악취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라 한다)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한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고, 위 견적서에 따를 경우 직접공사비는 1,903,424원이 소요된다).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

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직후에는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고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2. 8. 중순경 누수실험을 실시하였고, 위 누수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 누수방지공사만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의 임의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는데 5 내지 7 일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의 하루 매출액은 약 2,300,000원으로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이행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으로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원고는 위자료 내지 간접강제금으로 2013.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하는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 누수방지공사의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부터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이상 이를 초과하여 그 이전인 2013. 10. 1.부터의 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원식

판사 강나래

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공 비		합 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지상1층 쪽발집 주방												
1-1. 바닥												
바닥 타일 및 모르타르 칠거		M2	7.38	-	-	16,146	119,160	-	-	16,146	119,160	호표 1
바닥 콘크리트 칠거		M3	1.48	-	-	203,542	300,427	-	-	203,542	300,427	호표 42
스테인레스 트림치 설치	W:150	M	1.90	67,000	127,300	25,811	49,039	-	-	92,811	176,339	호표 3
PVC배수관 설치	100MM, 열노우 포함	M	6.00	18,543	111,258	25,644	153,866	-	-	44,187	265,124	호표 43
세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7.38	2,568	18,948	12,029	88,770	-	-	14,586	107,718	호표 5
바탕고르기		M2	14.76	1,592	23,493	9,252	136,560	-	-	10,844	160,053	호표 2
단일블럭기	300*300, 자기질	M2	14.76	11,558	170,601	30,770	454,171	-	-	42,329	624,772	호표 4
현장정리		M2	14.76	-	-	5,661	83,411	-	-	5,661	83,411	호표 35
폐기물처리비		TON	1.14	-	-	-	-	58,065	66,420	58,065	66,420	호표 36
[계]					451,600		1,385,404		66,420		1,903,424	